

9. 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개정법률

법률 제5,904호 1999. 2. 8

개 정 이 유

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지구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불편을 주는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등의 규제를 폐지·완화하려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조합설립 등기기간을 조합설립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(법 제18조).
- 나. 시행자가 사업시행 등의 공고와 동시에 그 사실을 시장·군수 및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함(법 제43조 및 제44조).
- 다.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와 환지처분 후 등기소에 등기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를 명확히 함(법 제61조 및 제65조).
- 라.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(법 제79조).

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등기)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

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제43조제2항중 “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 1필의 토지가 시행지구의 내외나 2이상의 공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통지와”를 “1필의 토지가 시행지구의 내외나 2이상의 공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와”로 한다.

제44조를 삭제한다.

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중 “지체없이”를 각각 “14일이내에”로 한다.

제65조제2항중 “지체없이”를 “14일이내에”

로 한다.

제79조제1항을 삭제하고, 동조제2항중 “시행자등”을 “시행자나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(이하 이 항에서 “시행자등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택회보